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방안 발표

-23. 11. 27.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 11. 27.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발표된 규제혁신 과제 중 주목할만한 과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규제혁신 추진방향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로드맵 마련, 규제개혁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규제로 인하여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에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성장 4.0 전략 추진, 규제혁신·현장애로 해소 등으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현장방문, 경제단체간담회 및 분야별(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등) 간담회를 통하여 ①바이오·헬스, ②무탄소에너지·환경, ③미래형 모빌리티·로봇, ④콘텐츠의 4개 분야 규제를 20건 발굴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과제 대상의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소하는 한편,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개혁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의 운영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과제

①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시기의 한시적인 비대면진료는 초진여부, 약배송 등의 제한이 없는 방식이었으나, 그 밖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진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함께,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의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②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대상 확대

현재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의 빠른 허가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115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신속처리제도를 운영중이나, 그 적용대상은 대체치료제가 없고 중대질환의 치료가 목적이거나, 희귀질환 치료의 목적이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가 목적인 경우로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행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대상 중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제약기업의 허가·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③ 무탄소에너지 리파워링 활성화

현재 태양광, 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설비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등으로 인해 기존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리파워링(초기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부품을 교체하여 용량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한 태양광·풍력 등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 도입한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규정 도입을 유도하고, 풍력 발전설비는 리파워링 관련 규제현황 및 제약 요인 등을 조사 하여 해소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④ 탄소포집관련 기업(CCUS)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현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개발 및 제조시설은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업종분류가 모호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입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탄소포집산업 관련 산업특수분류를 신설하여 관련 기업의 조속한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신산업인 CCUS 업계의 산업단지내 신규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단지 탈탄소 전환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⑤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관련 회계처리 기준 명확화

현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개발 및 제조시설은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업종분류가 모호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입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탄소포집산업 관련 산업특수분류를 신설하여 관련 기업의 조속한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신산업인 CCUS 업계의 산업단지내 신규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단지 탈탄소 전환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⑥ 로봇산업 통계 분류체계 개선

현재 관세통계품목분류 내 서비스용 로봇 분류코드가 부재하여, 서비스용 로봇의 정부지원 신청, 사업자 등록 및 로봇산업 통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서빙·배달로봇에 대한 관세통계품목분류(HSK) 코드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용 로봇 전체에 대한 코드 신설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원활한 정부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용 로봇시장의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⑦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대상 및 범위 명확화

현행 「게임산업법」에서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 시 24시간 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범위가 게임물의 기술적 보완·개선 외 모든 사항으로, 아이템 추가·캐릭터 수정 등 단순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미한 수정에 대한 신고 제외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경미한 수정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신고의무 완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해소하고, 게임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게임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시사점

신산업 분야는 기존의 규제와 기술의 발전 속도 간의 차이로 인하여 혁신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혁신방안의 과제로 채택된 영역에 대하여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규제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동향 및 혁신안을 주시하고 신사업 활성화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방통위·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이수경

T. (+82) 2 6182 8132

변호사

E. sgyi@yoonyang.com

정호선

T. (+82) 2 6182 8548

변호사

E. junghs@yoonyang.com

유현상

T. (+82) 2 6182 8716

변호사

E. hsryu@yoonyang.com

장슬기

T. (+82) 2 6182 8365

변호사

E. skjang@yoonyang.com